



제 30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

'24. 08. 27.(화) 10:00 제1차 본회의

『고령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』

## 제 안 설 명

( 김기창 의원 대표발의 )



고령군의회

# 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!  
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!
- 김 기 창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 
『고령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』에  
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## 제안이유는

「환경정책기본법」 58조2항 및 5항에 따라 환경 정책에 대한 심의·자문을 위해 환경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.

## 주요내용으로

안 제2조 기능은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으로 환경보전 계획 및 환경보전 정책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, 안 제3조 구성은 위원장인 부군수를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
조례 제정안은 “붙임 내역” 과 같으며

자세한 내용은

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
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 
부탁드립니다.

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# 고령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

(김기창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4. 8. .

발 의 자 : 김기창 · 이철호 · 유희순 ·  
김명국 · 성원환 · 성낙철

## 1. 제안이유

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58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고령군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 목적 (안 제1조)
- 나.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 (안 제2조)
- 다.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(안 제3조, 제4조)
- 라.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위촉 해제 (안 제5조, 제6조)
- 마. 환경정책위원회 회의 및 정책반영 (안 제6조~제9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58조 제2항 및 제5항
- 나. 입법예고(2024.04.12.~2024.04.19.) 시 의견 제출(별첨)에 대한 검토

## 고령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

#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58조제2항에 따라 고령군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고령군 환경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.

1. 고령군 환경보전계획의 수립·변경에 관한 사항
2. 환경오염 대책 및 환경보전 정책에 관한 사항
3. 환경 관련 현안사업 및 정책수립,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령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심의·자문을 요청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고령군 환경정책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-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- ③ 위원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.
- ④ 임명직 위원은 업무 관련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.
-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

1. 군의회 의원 2명 이내
2. 환경보전 또는 국토·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3.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한 사람

제4조(임기)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위원의 위촉 해제)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.

1.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
2.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 한 때
3.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
4.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

5.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

제7조(회의) ①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, 장소,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.

제9조(정책반영)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, 건의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고령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1. 제16조의 제목 중 “조정위원회”를 “정책위원회”로 한다.
2.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환경조정위원회”를 각각 “환경정책위원회”로 한다.